
202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3. 8.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3. 8. 14.(월) 14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조태준 위원, 이종수 위원, 이승민 위원, 원은자 위원, 권현정 위원 ○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성미 주무관(서기)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56호 : 교통불편민원처리 자료 ○ 2023-57호 : 화재현장조사서 ○ 2023-58호 : 한강자도 자전거 낙차사고 관련 보험접수 서류 ○ 2023-59호 : 시내버스 노선조정 건의 관련 검토회신 ○ 2023-60호 : (생활환경과-10253)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제출(23년 2분기) ○ 2023-61호 : (물재생시설과-8377) 난지통합바이오가스 설치 민간투자사업 기본의향서 제출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56호 : 인용 ○ 2023-57호 : 부분인용 ○ 2023-58호 : 인용 ○ 2023-59호 : 부분인용 ○ 2023-60호 : 기각 ○ 2023-61호 : 기각

1. [의안번호 2023-56] : 교통불편민원처리 문서

○ 000 위원장

보내주신 자료 읽어봤는데요. 해당 조사서 관련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한 것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나요?

○ 000 주무관

처음입니다.

○ 000 위원장

지금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검사, 규제,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호에 따라서 비공개 요청하신 거 맞으시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정처분 내용이라고 해서 과태료 20만 원, 그리고 경고라고 하는 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정인가요, 아니면 처분이 된 건가요?

○ 000 주무관

예정이고요. 처분기관은 이제 서울시가 아니고 자치구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청구인, 그러니까 운전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사내용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 000 주무관

그런 걸로 보입니다.

○ 000 위원장

이게 청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천국제공항 쪽에서 지시한 대로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 있었던 행동이 없었던 거잖아요.

○ 000 주무관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왜 과태료 20만 원이 처분예정인가요?

○ 000 주무관

담당 조사관은 개인적으로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처분이 내려진 다음에 이 청구인께서 이 해당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 000 주무관

서울시는 조사기관이고요. 저희가 처분기관인 자치구로 저희 조사결과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나머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진술이라든지 관련 절차들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택시요금 자체는 부당요금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서울시 소속 택시가 인천 쪽으로 영업을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게 과태료인가요?

○ 000 주무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서울 택시가 인천공항까지 운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시 조사결과가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어서 행정처분 기관인 자치구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서 번복될 수도 있고 새로운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요. 저희 조사 결과는 중간 내용이거든요. 최종 자료가 아니고요.

자치구의 최종 판단을 위해서 저희가 비공개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이런 경우에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따로 통지하는 게 있습니까?

○ 000 주무관

민원인에게 저희 조사결과 최종 처분결과가 통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지금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최종 통지가 안 된 상황에서 이 민원인은 지금 조사관 의견서를 정보공개로 청구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알았습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신가요?

○ 000 위원

지금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는 어떤 자료에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나요? 지금 구청에서 처분 사전통지나 관련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상태인가요?

○ 000 주무관

아직 처분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 000 위원

차치구에서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분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이의제기 형태로 의견진술 절차가 진행되나요?

○ 000 주무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모든 과태료 부과행위가 다 비슷한데요. 과태료 부과 전에 구청에서 사전의견 진술절차가 있습니다.

○ 000 위원

의견 진술하고 그다음에 최종 과태료 처분이 나간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붙임2 첨부되어 있는 파일 작성 주체가 서울시라는 거지요?

○ 000 주무관

이거는 저희가 작성한 자료는 아니고 구청에서 작성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 000 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심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 000 주무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차가 조금 있는데요. 이 민원인이 처음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는 이게 최종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온 상태는 아니었고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최종 결정이 다 끝난 걸로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 조사의견서를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 000 주무관

이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부검토 과정뿐만 아니고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담당 조사관들의 1차적

인 조사결과가 최종결과가 아닌데 공개가 되면 민원이나..

또 저희가 적발, 위반행위로 확인했는데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있고요.

또 담당 조사관들이 자기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공개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담당 자치구에서는 20만원 벌금 경고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신 거잖아요.

○ 000 주무관

내린 건 아니고 예정이라는 내용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사결과가 구청에 가고 구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과태료 부과되는 것도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사전의견 기간도 2주 정도가 부여가 되고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부과해서 이 자료를 공개신청한 건 아닙니다.

○ 000 위원장

더 이상의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공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일단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결정이 됐으면 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제가 이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네요.

○ 000 위원

지금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관부서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부르게 내부검토 중이다 해서 이 사안을 기각 결정을 하거나 또 다른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소관부서가 정확한 팩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번에 재상정하면 어떨겠습니까?

○ 000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처분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5호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이게 보류가 되면 정보공개심의 기간 답변이 있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을까요? 저도 보류 의견이기는 한데요. 그 기간만 문제가 안 되면 딱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주무관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 해당 안전에 대해서는 보류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까요?

○ 000 위원

재상정 요청이지요, 보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소관부서 담당자분께 다음번 재심의할 때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오시라고 당부 좀 해 주세요.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의견 주실 부분 있나요?

○ 000 주무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는데요. 확인 후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상정 안전은 이번 15차 심의회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다시 논의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 000 주무관

지금 확인했다고 하십니다.

○ 000 주무관

최종 행정처분 결과는 과태료 부과되지는 않았고요. 불문처리된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법상 행정처분은 아니고 경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공개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이 된 상태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확정처리가 됐으면 지금 소관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이 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겁니까?

○ 000 주무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처분기관인 구청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불문이라고 하면 불문경고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당장의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참작이 되거나 고려가 된다는지 이런 상황이 되나요?

○ 000 주무관

물론 기록에는 남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추가적인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불문처리를 하는 경우가 위반행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위반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 불문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문의하신 추가적인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 000 위원

통지라는 게 간단하게 불문처리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통지가 됩니까?

○ 000 주무관

불문 통지라는 결과만 나갑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저간의 사실관계는 민원인도 지금도 모르는 거네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조사관의 성함을 지우고 그 조사관께서 조사하신 내용을 공개해도 교통지도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되나요?

○ 000 주무관

일단 조사관 이름이 공개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나 피신고인이나 모두 담당 조사관 이름은 알고 있거든요. 담당 조사관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연락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우고 공개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끼리 조금 논의를 한 다음에 최종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5호에 의해서는 저희가 기각하기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 000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저도요.

○ 000 위원

저도 5호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저는 처음에는 이게 조사관의 의견을 그냥 중간검토 의견으로 봤거든요. 최종 의견이

청구인한테 통보가 되면 굳이 중간검토 의견까지 당사자한테 통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내부검토 과정이 끝났고 최종처분이 나왔으면 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중간 의견은 일단은 비공개로 하고 최종검토 의견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이 최종 의견이라는 게 달랑 불문통지 그 한 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 000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사자는 아무 불이익이 없으니까 굳이 이 조사관의 내부검토 의견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 000 위원

이게 보통의 경우는 최종 의견만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테요.

이 사안은 조금 특수한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간단계의 의견이 구청의 의견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관인 서울시의 의견이라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외부 기관의 의견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불문경고거든요. 만약에 민원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하면 기각을 했어야 맞는 것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무혐의라든가 무혐의에 준하는 그런 처분을 해야지, 왜 불문을 하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경고가 나왔다, 설령 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다룰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이게 쉽게 처분성을 인정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이 경고라는 기록을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아무런 구제 수단이 없다.

또 자기가 진술해낸 내용에 대해서 어쨌거나 아무리 중간과정이라도 제3의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판단한 자료가 유일한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이것도 공공기관은 또 문서 보존연한이 있어 가지고 몇 년 지나면 또 소멸해버릴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그럴 일은 없다고 하셨지만 만에 하나 경고라는 이 자료가 향후에 참고사항으로라도 불이익하게 작용했을 때 이 기사분께서 나는 그때 경고받을 사안이 아니고 원래는 무혐의를 받았어야 될 사안이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자료는 꽤나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중간과정에 있는 서류를 다 공개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닌데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제가 여기서 이 조사관의 의견은 요금에 인천 택시와 차이가 있는 서울 차량을 승차했기 때문에 사전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사전안내를 안 해서 부당요금 징수라고 이 심의과정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없음이 견해의 차이지 사실관계가 달라진 달라져서 판단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사관의 의견을 중간판단이라고 봤고, 최종심의 의견을 이제 최종판단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를 비공개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다수 의견 따르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의신청건을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2023-56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번호 2023-57] : 화재현장조사서

○ 000 위원

건물주에게 이 화재의 결과와 조사 관련해서 따로 통지하는 게 없나요?

○ 000 소방위

건물주한테 자동으로 통지하는 건 없고요. 본인들이 화재 관련해서 보험처리를 한다든가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을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화재증명원을 발급하고 현장에서 거의 만납니다. 만나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다 설명합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이번 사안은 보니까 건물에 따로 화재보험 같은 게 안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000 소방위

안 들어 있어요.

○ 000 위원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보면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사진, 내사종결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를 정보공개청구했잖아요. 그렇지요?

○ 000 소방위

네.

○ 000 위원

그리고 중부소방서 측에서는 이 화재현장조사서에서 신고자 등의 개인 인적사항, 지금 노란색 형광표시를 제외한 것만 빼고 부분공개하신 거지요?

○ 000 소방위

네, 다 해 줬어요.

○ 000 위원

부분공개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을 한 거잖아요.

○ 000 소방위

그렇지요.

○ 000 위원

이의신청한 내용은 지금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이제 119에 신고자하고 점유자와 그다음에 재산상 피해액을 알려달라.

○ 000 소방위

그렇지요.

○ 000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최초의 민원인은, 정보공개청구자는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다 요구를 했는데요. 부분공개에서는 인적사항을 빼고 화재현장조사서만 부분공개를 했잖아요.

○ 000 소방위

그렇지요. 왜냐하면 소방서에서는 화재조사서밖에 작성을 안 해요. 다른 건 다 경찰에서 합니다.

○ 000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서류들은 부존재, 그러니까 중부소방서 측으로서는 나머지 서류는 부존재인 셈이고, 화재현장조사서는 음영처리해 가지고는 부분공개를 한 거고요.

○ 000 소방위

그렇지요. 개인정보만 빼고요.

○ 000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중부소방서 측에서 밝히기를 재산피해액은 추후 공개가 가능하더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 000 소방위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주나 민원인들의 금액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쪽은 간접피해까지 피해로 하다 보니까 저희 소방서 추산 금액하고 그쪽하고 괴리가 커서 가급적이면 민원 되는 부분 때문에 가리는데요.

건물주이기 때문에 공개는 해 줄 수 있지요,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 000 위원

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소방서 당국이 추산하는 재산피해액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 000 소방위

맞습니다.

○ 000 위원

재산피해 공개하는거에 대해서 상가 임차인도 동의를 했나요? 이 부동산, 동산 다 같이 공개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000 소방위

그분들은 하고는 만나서 그 이후에 연락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화재 감식하고 불 꺼주고 그다음에 더이상 접촉할 이유가 없어요.

○ 000 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시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께서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저는 기각입니다. 이미 필요한 내용들이 부분공개됐기 때문에 저는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 들어온 재산피해를 주무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부분인용 결정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 000 위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 000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재산피해에 부동산, 동산 이 부분만 부분공개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 000 위원장

1페이지에 재산피해와 관련된 부분만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그렇게 저희 논의를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도 될까요?

○ 000 위원

네.

○ 000 위원장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산피해 것만 부분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 중에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산피해건을 부분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2023-57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번호 2023-58] : 한강자전거도로 낙차사고 관련 담당주무관이 작성 및 보험접수한 관련 서류 일체(의견서 등)

○ 000 위원

여기 보면 피해자가 지금 신고서를 접수해서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처리 요청을 했다까지는 간 거고, 그러면 지금 보험처리까지 이분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 000 주무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선정이 돼 가지고 민원인을 만났다 하더라고요. 만나고, 내일모레 16일날 저희 안내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 000 위원

그다음에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종료 예정일을 올해 12월 12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 000 주무관

그것은 현재 지방재정공제조합에다가 지금 서류를 넘겼고, 지금 보험 사건으로 분류돼서 현재 그쪽에 서류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내부결정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 000 위원

그다음에 지금 비공개 자료 중에 4페이지에 수기로 작성한 게 있는데요. 낙서 같기도 하고 메모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누가 작성한 건가요?

○ 000 주무관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피해자하고 직접 면담을 하면서 제가 보는 데서 작성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 000 위원

그다음에 여기 사고피해조사결과서에 보면 우리안내센터 의견 해서 시속 15km 이상으로 브레이크 밟지 않고 달렸다고 피해자가 말함. 그다음에 그런데 사전 과속방지턱, 횡단보도가 있어 속력을 줄였다고 하였으나 15km 이상으로 달렸다고 하였음 이렇게 지

금 정리가 돼 있는데요.

위에 신고서에 보면 15km 이하의 속도로 감속했다라고만 기재돼 있거든요. 이거는 피해자가 한 진술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000 주무관

제가 사고신고서에는 15km 이상이라고 쓴 것은 그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은 민원인 말대로 15km 이하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타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15km 이하.

○ 000 위원

오기 같다고 하시는. 알겠습니다.

○ 000 위원

통상적으로 시설물관리 하자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때 여기 관련 비공개 첨부자료 쪽을 보면 지금 사고지점으로부터 사전에 정말 여러 개의 어떤 안내판을 통해서 천천히 가시라 이런 안내판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에 서울시 측에서 다 시설물 관리책임을 부담합니까?

○ 000 주무관

지금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해당 절차가 이미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고 배상액을 가늠하는 그런 절차인지, 아니면 배상 여부 자체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 000 주무관

이건 진행 중인데 그렇게 엇갈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피해자하고 손해사정인하고 과실 여부를 얼마로 따져서 보상금이 정확해지기도 합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여기 속도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여기 보면 사고경위에 모래에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돼 있는데 이 모래가 깔린 게 어쨌든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부 과

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 아닌가요? 모든 자전거사고라고 다 보상이 나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모래가 깔려 있던 건 사실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상책임의 범위, 그런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이분이 잘못된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손해사정인한테 공무원으로서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겨주는 그 기록지가 사고피해조사결과서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작성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 000 위원

공제회에서 보험금 지급은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어요?

○ 000 주무관

지급 민원인하고 그러면 과실 여부를 따져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 000 위원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소송이 준비단계에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 000 주무관

현재 손해사정인하고 보험금액에 대해서 같이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 000 위원장

이 비공개 문서라고 말씀하시는 사고피해조사결과서는 그러면 청구인도 해당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 000 주무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 000 위원

혹시 영조물 배상사고접수 문서 이거 한강사업본부에서 작성한 건가요?

○ 000 주무관

영조물 배상사고접수서는 제가 작성을 했고요. 신고서는 그분이 작성했고요.

○ 000 위원

여기에는 15km 이하의 속도로 급하게 가던 중이라고 했는데 이 비공개 문서에는 15km 이상이라고 이게 써놔서요.

○ 000 주무관

지금 보니까 오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사고경위에 15km 이하로, 이분 의견을 그대로 존중해서 15km 이하로 쓰는 게 맞는데 15km 이상으로 쓴 것은 오기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이게 이하 이상만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정황상으로 이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도, 급하게 천천히 이 부분도 지금 사실 판단 부분이에요. 15km 이하로 사고 신고접수가 됐지만 어쨌든 지금 담당자분께서는 급하게 가고 있었다라고 지금 팩트로 그렇게 쓴 거기 때문이에요.

○ 000 주무관

그래도 영조물 배상사고접수서에 보면, 사고경위에서 보면 저도 그 민원인의 의견에 맞게 90도 급경사지를 15km 이하의 속도로 급하게 가던 중 깔린 모래에 미끄러져 다침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저는 일단 공개 의견입니다.

이게 의사결정 과정 중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의사결정은 망원센터 입장에서는 끝난 거 아닌가 싶고, 보험처리까지를 완료 안 됐다고 해서 이게 의사결정과정 중인 정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게 공개가 되어서 안 될 사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보 험사하고 어떤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자료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

지금 4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 이게 적용이 될까요? 지금 재판은 진행 중도 아닌 데 4호를 놓고 비공개 의견을 넣어주셨거든요.

○ 000 위원

4호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5호로 하는데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이미 교통사고 배상접수에도 관련 내용이 적혀져 있고, 비공개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오타라고 하니까요. 저는 이게 사실관계가 달리 적혀져서 이걸 비공개하나 했는데 조사관님도 오타가 있었다고 하니까 굳이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면 저도 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4호는 적용대상 아니고, 5호 적용했을 때도 내부검토 과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요. 일단 어쨌든 망원센터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완료한 거고, 그 보험금 액수에 대해서 손해사정인과 과실비율 논의 중이라고 하니 5호를 적용해서 비공개하기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도 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4호 적용은 불가하고, 그다음에 5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내부검토 과정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건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인용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58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의안번호 2023-59] : 시내버스 노선조정 검토회신 문서

○ 000 위원

관악구에서 2022년 7월 19일에 검토건의를 서울시에 했고, 서울시가 2022년 10월 26일에 회신을 했거든요. 지금 이 시내버스 5517번 노선조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000 주무관

해당 건은 저희가 유관부서인 관악구와 노선조정 관련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검토 의견을 주었는데 의견 준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000 위원

그냥 검토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네요? 전혀 진행된 건 하나도 없고요.

○ 000 주무관

저희가 그런데 이게 안양시와, 노선조정안을 보시면 현재 노선을 안양시 관내까지 연장 하자는 게 요지인데요. 저희가 안양시와는 유선상으로 구간연장 관련해서 협의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문서상으로 진행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 000 위원

아직 조정사업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거면 이건 서울시의 단순한 검토 의견 같거든요. 이 검토 의견이 끝나서 뭔가 사업 시작이 되면 내부검토 과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 민원처리 답변으로 처리해도 될 사안 아닌가.

또 이 비공개 관련을 보면 3개가 있는데 관악구하고, 이 노선은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저도 이거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사업 추진도 하나도 안 됐고, 이거를 내부검토 과정이라고 포섭해도 실제 내부검토가 언제 종료되는지조차 정리가 안 돼 있고, 이거 그냥 단순 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으로

해서 공개해도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게 공개해서 어떤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사정이 있을까요?

○ 000 주무관

일단은 저희 부서 의견은 현재 노선 기존 경로에서 안양시 관내 구간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인데요. 이게 일반 시민한테 공개됐을 경우에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선 이게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의견을 회신한 내용에 보면 연장할 시에 운행 거리가 약 8km 정도 연장이 되고, 운행시간은 약 30분 이상 증가될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 000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라든가 불편이 초래된다 이런 내부 검토가 있으면 그거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이건 일반적인 검토 의견 같은데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실제 실사가 나갔거나 연구용역을 쫓다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 000 주무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안양시에 들어가는 그 의견을 저희가 공개했을 때 시민들에게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양시에 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더라 이게 저희 부서의견으로는 과연 공개가 되는 게 맞는지 싶어서요.

○ 000 위원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검토를 하고 있다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안양시까지 노선이 확장되면 안양시와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들인 거잖아요. 실제 안양시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실제 30분 이상 증가돼서 배차간격을 실제 연구용역을 쫓던 것도 아니고 단순 내부에서 그냥 검토했던 거 아닌가요? 이건 일반민원으로 가도 되지 않나. 이거를 공개 그랬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다든가 앞으로 노선조정사업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저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공

개 의견을 주셔서요.

그냥 민원을 청구한 시민이라면 이 정도 답변은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000 주무관

일단은 이 조정안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인 건데요.

○ 000 위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검토에 대해서 어떠한 진행사업이 나간 것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걸로 끝이 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걸 최종으로 그냥 민원인한테 공개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검토사업이 언제 종료되는지조차 지금 아무것도 예정이 안 돼 있잖아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악구의 건의에 대해서 그냥 서울시가 단순 민원회신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비공개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 000 위원장

담당자께서는 해당 문건이 왜 비공개되어야 되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000 주무관

일단은 저희가 2020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때 노선신설 관련해서 내부검토 단계에 미확정된 사유로 대시민 비공개한 문서가 있었는데요.

○ 000 위원장

그러면 해당 건은 노선 공개와 관련된 건으로 비공개를 심의한 건가요?

○ 000 주무관

노선 신설 관련 의견제출 문서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공개를 한 이유는 일단 미확정된 유관기관과의 협의내용이고요.

물론 지금 구체적인 이 문서 외에 진행상황이라든지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이런 저희 유관기관과의 협의내용까지 전부 공개를 해버리면 앞으로 서울시 노선 업무를 볼 때 있어서 동일한 건들을 전부 대시민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해서요.

○ 000 위원장

이 문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안양시와의 협의를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부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안양시의 어느 지점까지 5517번이 연장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거잖아요.

○ 000 주무관

그게 붙임문서가 5517번 노선 연장안이거든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이 노선도 연장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것을 공개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공문서 하나만 공개 요청한 건가요?

○ 000 위원

다 공개 요청한 것 같아요. 연장안도, 노선도도 공개해 달라고.

○ 000 위원

이게 관악구 문서에 보면 건의를 한 관악구 주민들이 5517번 버스를 이렇게 연장해달라고 요청 건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회신이 갔나요? 건의를 한 사람 실제 주민들에게. 관악구든 아니면 서울시에서든.

○ 000 주무관

정확한 민원처리 현황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요.

○ 000 위원장

관악구가 먼저 요청하고 요청한 거지요?

○ 000 위원

이 서울시 답변에 대해서는 관악구 주민이 불편해서 노선건의를 했으니까 이 정도 서

울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수준에서는 민원인한테 공개해도 될 사안 아닌가 싶은데요. 어느 민원인은 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계속 장기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떤 의견도 주지 않으면 답변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계속 시간만 끌다가 끝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관악구 주민이라면 알아야 될 정보 같다고도 보입니다.

○ 000 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시면,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의견주십시오.

○ 000 위원

5517번 노선연장안 이 지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유지하고요. 또 관악구 의견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비공개로 하되,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건의 사안에 대해서 민원내용 답변하듯이 검토를 회신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

소관부서 설명을 들으니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의 과정에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고, 오히려 노선도 이렇게 선 그어져 있는 부분이랑 관악구 부분은 사실 지하철 노선도 새로 개통되거나 그럴 때에 준해서 혹시 8호 적용이 가능할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게 그렇게 지나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도 어쨌든 문서 공개에 대해서는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 몇 호를 적용할지 여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 000 위원

저도 공개 여부는 지금 두 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노선도는 넓게 보면 8호 적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5호로 해도. 왜냐하

면 관악구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중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5호로 하면서 공개범위는 우리 두 분 위원님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000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일전에 여러 번 다뤘던 안전 중에 소위 지하철 노선연장도와 같은 연장계획 관련해서 들어왔던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연장할 계획이 검토 중인 사안이고 또 향후에 부동산투기 우려 등 해서 8호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이 사안 역시, 이거는 또 서울시에서만 지금 단독으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양시와 어떤 시 경계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5517번 버스 연장계획은 안양시와의 어떤 관계에서 검토 중일 수밖에 없는 계획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필요한 내용들은 부분공개를 하지만, 또 우리가 지난번에 선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연장안, 그림 이런 부분들은 민감해서 저는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요. 앞서 위원님들 의견하고 비슷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전반적인 의견이 문서가 3개가 있잖아요. 관악구, 서울시, 노선도 이렇게 3개인데요. 관악구랑 노선도를 보게 되면 대충 어떻게 그려질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비공개인데, 그거를 5호로 할 거냐 8호로 할 거냐 그게 조금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거 가지고서 부동산투기 우려까지 언급하는 거는 좀 지나치고요. 5호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관악구 공문이랑 안내도는 5호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답변은 저희가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 000 위원

네.

○ 000 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관악구 공문과 노선도는 5호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서울시 문건은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3-59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안번호 2023-60] : (생활환경과-10253)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제출('23년 2분기)

○ 000 위원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붙임문서 2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 투자실적이 있고 향후 투자계획 이렇게 단위 백만원 해서 표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국고보조로 받은 금액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런 내역들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공개가 되나요?

○ 000 주무관

현재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결처리되고 나서는 다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은 진행 중인 내부검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지금 청구인한테 나간 결정통지서에는 비공개 사유를 5호만 기재를 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주신 안전상정요청서에는 6호까지를 포함을 하면서 여기 붙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지금 난지물재생센터가 분뇨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까?

○ 000 주무관

예전에 2019년 이전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서대문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설들이 노후되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 2019년 1월자로 중단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더 먼 곳으로, 덕은지구나 난점마을에서 더 먼 곳으로 이전해서 지하화하면서 신축으로 가겠다, 이전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 000 위원

한 2년 정도 전에 이 난지물재생센터 관련해서 그때도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지하화 계획 이런 것들의 청사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공개해 달라는 거였는데 이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향후에 확정되는 대로 공개를 하겠다. 그때 담당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한테 전달된 청사진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를 하면서 기존의 처리용량보다 더 용량을 늘린다는 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민감한 이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보공개청구가 올라온 게 기존의 분뇨처리에 추가해서 음식물처리까지 지금 이 계획에 잡혀 있다라고 시민단체 측에서 파악을 하고 해당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시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저는 5호, 6호로 비공개 의견이라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입니다.

○ 000 위원

저도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

저도 같습니다.

○ 000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미 2년 전에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에서 그 당시 서울시 측에서는 기존 처리시설에서 용량을 늘려서 지하시설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당시 소위 고양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달갑지 않은 내용이고, 특히나 그 바로 옆에 덕은신도시가 들어서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 기존의 처리시설보다 용량을 늘리겠다는 거를 2년 전에 서울시에서 나중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동의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뒤에 이 분뇨처리시설의 용량을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한 바도 없고, 현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2년 전의 약속을 서울시의 이 해당 소관부서에서 안 지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5호, 6호에 따라서 기각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위원 5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5호, 6호에 따라서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5호, 6호에 따라 기각 결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2023-60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안번호 2023-61] : (물재생시설과-8377) 난지통합바이오가스 설치 민간투자사업 기본의향서 제출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 000 위원장

이 청구인께서 부서의견조회라고 하는 공문을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PPT 자료도 함께 요청하신 건가요?

○ 000 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PPT 자료 전체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담당자분께서는 판단하시기에 해당 내용을 비공개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주무관

이 부분은 사업자가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나름대로 투자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으면 하는 제3자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는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면 일반 시민들이 오히려 어떤 사업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혼란이라든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이 청구인은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 000 주무관

전혀 없습니다.

○ 000 위원

지하화를 하면서 처리용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마포구 주민들이나 또는 고

양시 주민들한테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까?

○ 000 주무관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여기 민간투자사업 기본의향서는 민간이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 000 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시면 논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5호랑 7호에 의해서 저는 기각 의견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

같습니다.

○ 000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5호, 7호에 따라서 이의신청건은 기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5호와 7호에 따라서 기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2023-61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